

#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7494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6. 21.

발의자 : 김상훈 · 강석진 · 곽대훈  
송희경 · 박성중 · 정태옥  
김규환 · 김승희 · 유재중  
최연혜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가 아닌 물질·제제 등 중 오·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·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종류를 임시마약, 임시대마,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, 그 취급·처분에 관한 사항은 각각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·처분에 관한 규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의 임시마약류 제도는 그 지정기준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고, 지정에 긴급을 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시마약, 임시대마,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기 위한 분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분의 실익도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, 실제 현재까지 임시마약류는 모두 임시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되고 있어 그 취급·처분에 관하여 임시마약류의 위해성에

상응하는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임시마약류를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,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1군 임시마약류와 2군 임시마약류로 구분하도록 하고 그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며, 임시마약류 관련 행위금지 규정 및 위반 시의 양형기준도 1군 및 2군 임시마약류의 위해성에 따라 합리적이고 비례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임시마약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, 제58조제1항제8호, 제59조제1항제13호, 제60조제1항제5호, 제61조제1항제8호 등).

##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라. 제5조의2제5항

제5조의 제목 중 “마약류 취급의”를 “마약류 등의 취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마약류”를 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”을 “마약, 향정신성의약품 및 임시마약류”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제3호 중 “임시마약,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대마”를 “1군 임시마약류 또는 2군 임시마약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본문 및 단서 중 “제2항”을 각각 “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소지”를 “추출·소지”로, “조제·투약”을 “투약”으로, “제공하거나,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”를 “제공하여서는 아니

되며,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·시설·장비·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”로 한다.

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.

1. 1군 임시마약류: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·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·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

2. 2군 임시마약류: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·정신적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

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임시마약류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「약사법」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

2. 「약사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

제15조 전단 중 “제5조의2제4항”을 “제5조의2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마약이나 예고임시마약 또는 임시마약”을 “마약”으로 한다.

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”를 “마약류,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”로, “마약류취급승인자”를 “마약류취급승인자”,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”로, “마약류 및

원료물질에”를 “마약류,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“마약류”을 “마약류·임시마약류”로 한다.

제47조 중 “마약류에 대하여는”을 “마약류, 예고임시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”으로 한다.

제58조제1항제1호 중 “제3조(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)제2호·제3호”를 “제3조제2호·제3호”로, “제5조의2제4항(예고임시마약류의 경우 또는 제5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, 제18조제1항”을 “제18조제1항”으로, “마약이나 임시마약”을 “마약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제5조의2제4항”을 “제5조의2제5항”으로, “마약이나 임시마약”을 “마약”으로, “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”을 “임시마약류를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5조의2제5항(예고임시마약류의 경우 또는 제5조의2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을 위반하여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임시마약류를 재배·추출·제조·수출입·매매·매매의 알선·수수 또는 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·소유한 자

제59조제1항제9호 중 “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”을 “제4조제1항”으로, “마약이나 임시마약”을 “마약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 중 “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”을 “제4조제1항”으로, “대마나 임시대마”를 “대마”로, “대마초나 임시대마초”를 “대마초”로 하며, 같은 항

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5호”를 “제5호 및 제13호”로 한다.

13.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임시 마약류를 소지·소유·사용·관리·운반·투약·보관한 자

제60조제1항제4호 중 “제5조제1항·제2항(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을 “제5조제1항·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
가.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·시설·장비·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

나.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시마약류를 재배, 추출,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려할 목적으로 소지·소유한 자

제61조제1항제6호 중 “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”을 “제4조제1항”으로, “대마나 임시대마”를 “대마”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제5조제1항·제2항(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을 “제5조제1항·제2항”으로, “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”를 “향정신성의약품,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8호”를 각각 “제9호”로 한다.

8.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

위를 한 자

가.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시마약류를 매매, 매매의  
알선, 수수, 소지, 소유, 사용, 관리, 투약, 운반, 보관, 제공한 자

나.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 행  
위를 하기 위한 장소·시설·장비·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  
게 제공한 자

제62조제1항제3호 중 “제시한 자”를 “제시한 자(예고임시마약류에 대  
해서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제63조제1항제14호 중 “제41조제1항(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 
를 포함한다)”을 “제41조제1항”으로, “제47조(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  
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를 “제47조”로 한다.

제64조제16호 중 “향정신성의약품을”을 “향정신성의약품, 예고임시마  
약류, 임시마약류를”로, “제41조제1항(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  
우를 포함한다), 제42조 또는 제43조”를 “제41조제1항, 제42조, 제43조  
또는 제47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7호 중 “제41조제1항(제5조의2제5항  
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를 “제4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일반 행위의 금지)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~ 11. (생 약) 1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가. ~ 다. (생 약) 라. <u>제5조의2제4항</u>	제3조(일반 행위의 금지) ----- ----- -----. 1. ~ 11. 1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<u>제5조의2제5항</u>
제5조( <u>마약류 취급의 제한</u> ) ① (생 약) ② 이 법에 따라 <u>마약류</u> 를 소지·소유·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	제5조( <u>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</u> 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마약류</u> 또는 <u>임시마약류</u> ----- ----- -----. ③ ----- -----

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·수출·제조·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## 1. ~ 5. (생략)

제5조의2(임시마약류 지정 등) ①  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 
가 아닌 물질·약물·제제·제품  
등(이하 이 조에서 “물질등”이  
라 한다) 중 오용 또는 남용으  
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  
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 
취급·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  
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 
지정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 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
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지정 대  
상에서 제외한다.

1. 「약사법」 제31조제2항 및  
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 
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  
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 
의약품

마약, 향정신성의약품 및 임시마약류

-.  
1. ~ 5. (현행과 같음)  
[5조의2(임시마약류 지정 등) ①]  
-.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. <단서 삭제>

1. 1군 임시마약류: 중추신경계  
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  
적·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  
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 
신체적·정신적 위해를 끼칠

2. 「약사법」 제34조제1항에  
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  
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  
험용 의약품

### <신 설>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 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, 임시마약류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

## 가능성이 높은 물질

2. 2군 임시마약류: 의존성을  
유발하는 등 신체적·정신적  
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 
물질

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
의약품은 임시마약류의 지정  
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「약사법」 제31조제2항 및  
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 
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  
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 
의약품

2. 「약사법」 제34조제1항에  
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 
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 
의약품

3

---

---

---

---

---

---

---

---

---

---



나,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  
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1. · 2. (생 략)

(5) 예고임시마약류의 처분에  
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하며,  
임시마약류의 취급 및 처분 등  
에 관하여는 제3조, 제5조제2항  
및 제3항, 제41조 및 제47조를  
준용한다. 이 경우 “마약류”는  
“예고임시마약류” 또는 “임시마약류”로, “마약”은 “임시마약”으로, “향정신성의약품”은  
“임시향정신성의약품”으로, “대마”는 “임시대마”로 각각 본다.

제15조(마약류의 저장) 마약류취급자,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·소지 또는 관리

여서는 아니 되며,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·시설·장비·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 
타인에게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  
다. -----  
-----  
-----.

### 1. · 2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15조(마약류의 저장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제5조의2제5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하는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마약이나 예고임시마약 또는 임시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.

제41조(출입·검사와 수거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,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·창고, 대마초 재배지, 약국, 조제 장소, 그 밖에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.

- 2. (생약)
  3. 마약류·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과

마약

- 2. (현행과 같음)
  - 마약류·임시마약류-----  
-----

물건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  
에 따른 수거. 이 경우 시험  
용으로 필요한 최소 분량으로  
한정한다.

## ② · ③ (생략)

제47조(부정 마약류의 처분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소지, 소유, 사용, 관리, 재배, 수출입, 제조, 매매, 매매의 알선, 수수,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류에 대하여는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제58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1. 제3조(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)제2호·제3호, 제4조제1항, 제5조의2제4항  
(예고임시마약류의 경우 또는

-----  
-----

-----  
-----

##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58조(별 칙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제3조 제2호·제3호  
-----  
제18조 제1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제5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,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·제조·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·소유한 자

## 2. ~ 6. (생략)

7.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  
4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 
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·조  
제·투약·제공한 자 또는 향정  
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  
의약품을 매매·수수·조제·투  
약·제공한 자

### <신 설>

-----마약-----

---

## 2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 제5조의2제  
5항-----

-마약-

한국어판

---

8. 제5조의2제5항(예고임시마약  
류의 경우 또는 제5조의2제5  
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  
외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  
다)을 위반하여 제5조의2제1  
항제1호에 해당하는 임시마약  
류를 재배·추출·제조·수출입·  
매매·매매의 알선·수수 또는  
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 
소지·소유한 자
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59조(별 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	제59조(별 칙) ① ----- ----- -----.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<u>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</u> 을 위반하여 <u>마약이나 임시마약</u> 을 소지·소유·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	9. <u>제4조제1항</u> ----- -----마약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0. (생 략)	10. (현행과 같음)
11. <u>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</u> 을 위반하여 <u>대마나 임시대마</u> 의 수출·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<u>대마초나 임시대마초</u> 를 재배한 자	11. <u>제4조제1항</u> -----대마----- -----대마초-----
12. (생 략)	1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3. <u>제5조의2제5항</u> 을 위반하는 자
13. (생 략)	13. <u>제5조의2제5항</u> 을 위반하는 자
② (생 략)	14. (현행 제13호와 같음)
③ 제1항( <u>제5호</u> 는 제외한다)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	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제5호</u> 및 <u>제13호</u> ----- -----

처벌한다.	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60조(별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60조(별칙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제5조제1항·제2항(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9조제1항, 제28조제1항, 제30조,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</u>	4. <u>제5조제1항·제2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
<신 설>	5. <u>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</u>
	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</u>
	가. <u>제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·시설·장비·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</u>
	나. <u>제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시마약류를 재배, 추출, 제조 또는 수출</u>

	<u>입하거나 그려 할 목적으로</u> <u>소지·소유한 자</u>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61조(별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61조(별칙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<u>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·소지·소유·수수·운반·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</u>	6. <u>제4조제1항</u> ----- <u>대마</u> ----- -----
7. <u>제5조제1항·제2항(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</u>	7. <u>제5조제1항·제2항</u> ----- ---- <u>향정신성의약품,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</u> ----- --
<u>&lt;신 설&gt;</u>	8. <u>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</u> 가. <u>제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시마약류를 매매, 매매의 알선, 수수, 소지, 소유, 사용, 관리, 투</u>

	<p><u>약, 운반, 보관, 제공한 자</u></p> <p><u>나.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·시설·장비·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</u></p>
<u>8. ~ 10. (생 략)</u>	<p><u>9. ~ 11. (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)</u></p> <p><u>②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<u>③ -----제9호-----</u></p> <p><u>-----제9호-----</u></p> <p><u>-----.</u></p>
<p>② (생 략)</p> <p>③ 제1항(제2호·제3호 및 <u>제8호</u>는 제외한다) 및 제2항(제1항제2호·제3호 및 <u>제8호</u>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)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</p> <p>제62조(별 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	<p>제62조(별 칙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<u>제시한 자</u></p>	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제시한 자(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 서는 제외한다)</p>
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<p>제63조(별 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~ 13. (생 략)</p> <p>14.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<u>제41조제1항</u>(<u>제5조의2제5항</u>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출입, 검사, 수거 등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<u>제47조</u>(<u>제5조의2제5항</u>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처분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</p> <p>15. · 16. (생 략)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 <p>제64조(별 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~ 15. (생 략)</p> <p>16. <u>향정신성의약품</u>을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<u>제41조제1항</u>(<u>제5조의2제5항</u>에서 준용하</p>	<p>제63조(별 칙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-----</p> <p>----- <u>제41조제1항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 <u>제47조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15. · 1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4조(별 칙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16. <u>향정신성의약품</u>, 예고임시 <u>마약류</u>, 임시마약류를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제41조</u></p>
---	--

<p><u>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·수거·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</u></p> <p>17.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<u>제41조제1항(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</u>에 따른 출입·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</p> <p>18. ~ 20. (생략)</p>	<p><u>제1항, 제42조, 제43조 또는 제47조-----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17. ----- -----<u>제41조제1항-----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18. ~ 20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